

## 변경 대비 표(일반 및 자펀드)

### 1. 대상 펀드:

no.	펀드명	변동성 값 업데이트	등급 변경	세법	자본 시장법	신용평가 등급	종류 신설	결산
1	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(분배형)	-	-	-	0	0	-	0
2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0	0	-	0	0	-	-
3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0	0	-	-	-	-	-
4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0	0	-	-	-	-	-
5	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0	-	-	-	-	-	0
6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0	-	-	0	-	-	-
7	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0	-	-	-	-	-	-
8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0	-	-	-	-	-	0
9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0	-	-	-	-	-	-
10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0	0	-	0	-	-	0
11	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0
12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0	-	-	-	-	-	-
13	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0	-	-	0
14	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0	-	-	-	-	-	0
15	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0
16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0	-	-	-	-	-	-
17	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0	-	-	-	-
18	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)	-	-	0	0	0	-	-
19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(주식)	-	-	0	0	0	-	-
20	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재간접형)	-	-	0	0	-	-	-
21	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벤처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0	0	0	-	-
22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-2호(주식)	-	-	0	0	0	-	-
23	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0	0	-	-	-
24	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0	0	-	-	-
25	미래에셋차이나솔로문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	-	-	0	0	0	-	-
26	미래에셋플래티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0	0	0	-	-
27	미래에셋3억만들기술로문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F	-

### 2. 변경 사항:

1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2) 세법 개정사항 반영

3)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

4)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

5) 종류 신설

6)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

3. 효력발생일: 2016년 10월 14일(금)

4. 변경 내용:

1) 변동성 값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(%)	변경 후(%)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.97%	5.77%	5	4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13.04%	2	3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8.18%	3	4
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6.08%	17.70%	2	2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)	2.04%	1.63%	5	5
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18.19%	17.21%	2	2
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11.27%	11.45%	3	3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11.36%	11.78%	3	3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3.50%	4	5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3.01%	13.23%	3	3
미래에셋소비성장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.31%	4.14%	5	5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16.17%	2	2

2) 세법 개정사항 반영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4.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 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 합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	①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집합 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 합니다.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

<p><b>가. 이익배분</b></p>	<p>판매회사(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)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. <b>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b>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판매회사(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)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. <b><u>다만,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b></p> <p>※ 2016년 10월 14일 이후 매년 결산·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(다만,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·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·분배되어 과세됩니다).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②~③ (현행과 동일)</p>
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<p><b>제33조(이익분배)</b>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. <b><u>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b>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시 분배한다.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</p>

	<p>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이익금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한다.</p> <p><u>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u></li> <li><u>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매매이익</u></li> </ol>
--	---	---

### 3)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

#### 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2부. 8. 나. 투자제한.</b> <b>&lt;동일종목 투자(예외)&gt;<sup>1</sup></b></p>	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<u>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</u>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 또는 어음, <u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</p>	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“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<u>기업어음증권</u>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 또는 어음, <u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u>,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</p>

<sup>1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

	<p>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	<p>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),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p>
<p>제2부. 8. 나. 투자제한. &lt;집합투자기구예의 투자&gt;<sup>2</sup></p>	<p>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(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<p>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다만,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(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
<p>제5부. 1. 가. 집합투자자총회 등 / (3) 집합투자자총회 결의 사항</p>	<p>&lt;신설&gt;</p>	<p>5)의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p>
<p>제5부. 3. 가. 정기보고서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</p>

<sup>2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

/ (2)자산운용보고서	<p>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</b>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	<p>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<b>다만,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</b>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
제5부. 3. 나. 수시공시 / (1)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	<신설>	<b>5)의2.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</b>
제5부. 3. 나. 수시공시 / (2)수시공시	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<b>단순한 자구수정 등</b>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	5) 투자설명서의 변경. 다만,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, <b>단순한 자구수정 등,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</b>
제5부. 3. 나. 수시공시 / (3)집합투자 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	<p>☞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b>주주총회일로부터 5일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등을</b> 공시할 것</p>	<p>☞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.</p> <p>-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<b>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</b> 공시할 것</p>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----	------	------

<p><b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sup>3</sup></b></p>	<p>2.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<b>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</b>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 또는 어음, <b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sup>4</sup></b>, 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」 또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에 <b>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b></p>	<p>2.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,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[<b>기업어음증권</b>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]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, 같은 호 가목·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,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.) 또는 어음, <b>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</b>, 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」 또는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「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,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<b>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·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</b></p>
<p><b>제19조(운용</b></p>	<p>4. 투자신탁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</p>	<p>4. 투자신탁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</p>

<sup>3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

<sup>4</sup> 해외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에만 해당됨.

<p><b>및 투자 제한)<sup>5</sup></b></p>	<p>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~라 (생략) 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  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(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<b>제80조 제10항</b>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	<p>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~라 (현행과 같음) 마.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. <b>다만,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.</b>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.  바.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(외국 판매회사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)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<b>제80조 제11항</b>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</p>
<p><b>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	<p>① ~ ③ (생략)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<b>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</b>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</p>	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수익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<b>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</b></p>

<sup>5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.



	니하다.	<b>경하거나</b> 법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<b>제49조(금전 차입 등의 제한)</b>	① (생략)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<b>투자신탁재산 총액</b>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① (현행과 같음) 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<b>투자신탁 순자산총액</b>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<b>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	① ~ ⑥ (생략)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b>다만,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b>	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<b>다만,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,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,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.</b>

4)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 하락 시 처분 등 관련 사항 반영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8.가.	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	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

<b>투자대상 &lt; 채권&gt;<sup>6</sup></b>	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	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 <b>취득 시</b>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
<b>제2부.8.가. 투자대상 &lt; 어음,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&gt;<sup>7</sup></b>	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,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"기업어음증권"이라 한다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"어음등"이라 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	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, <b>취득 시</b>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"기업어음증권"이라 한다),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<b>취득 시</b>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 이하 "어음등"이라 한다)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

<집합투자규약>

구분	정정 전	정정 후
<b>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<sup>8</sup></b>	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	2.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 <b>취득 시</b>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

<sup>6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

<sup>7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

<sup>8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

	<p>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4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) 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	<p>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 (이하 "채권"이라 한다)</p> <p>4.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),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(<b>취득 시</b> 신용평가등급이 A2- 이상이어야 한다.) (이하 "어음"이라 한다)</p>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<sup>9</sup>	<신설>	<p><b>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.</b></p>

## 5) 종류 신설

### 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[종류형 구조] <신설>	[종류형 구조] [아래 참조1, 2]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. 매입, 환매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	(2) 가입자격 <신설>	(2) 가입자격 <종류 F> [아래 참조1]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(8) 환매수수료 <신설>	(8) 환매수수료 <종류 F>

<sup>9</sup> 일반형 펀드에만 해당됨
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 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		[아래 참조1]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 한 사항	<신설>	<종류 F의 수수료 및 보수> [아래 참조 1, 2]

<집합투자계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 류 및 명칭 등)	<신설>	종류 F [아래 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<신설>	종류 F 수익증권
제39조(보수)	<신설>	종류 F [아래 참조2]
제41조(환매수수료)	<신설>	종류 F 수익증권 [아래 참조1]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	판매수수료	환매수수료
종류F	·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 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·판매회사의 일임·자문 계좌(랩어카운트, Wrap Account)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 기 원하는 가입자 ·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[참조 2] 보수표(%)

구분	운용	판매	신탁	사무
종류F	0.61	0	0.04	0.03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